

농·어업인의 세금 길잡이

세무사 고대식

목차

I. 조세체계

II. 농·어업인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의 신고와 납부

III.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IV.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V. 영농상속 공제

I. 조세체계

과세권자	세금부담	세금의 종류
국세 (과세권자가 국가)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상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직접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Ⅱ. 농·어업인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의 신고와 납부

1. 사업자와 비사업자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일반사업자(법인포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비 사업자	상기 외	

※사업자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사업자등록 의무 : 독립된 사업(사업성)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정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별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함.

- 농가부업(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 상설판매장(영업장) 개설 : 도소매업
 - 전통주 제조
 - 농산물판매 및 가공업
 - 통신판매업(인터넷 홈페이지)
 - 농가가 홈페이지 개설하여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 : 사업성
- ※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 ※ 논·밭의 임대소득 : 작물생산에 이용시 비과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신고 납부기한
제1기	예정 과세기간(1.1~3.31)	4.1~4.25
	확정 과세기간(4.1~6.30)	7.1~7.25
제2기	예정 과세기간(7.1~9.30)	10.1~10.25
	확정 과세기간(10.1~12.31)	익년1.1~1.25

※ 간이과세자는 1.1~12.31 과세기간의 실적을 익년 1.1~1.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

유형별 사업자등록의무와 세금의 신고납부의무

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	소득세 과세	사업자등록 의무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10억 이하)	과세 안 됨	과세 안 됨	없음
축산업 (농가부업규모 이하)	과세 안 됨	과세 안 됨	없음
축산업 (농가부업규모 초과하는 소득금액 합계액 연 3,000만원 이하)	과세 안 됨	과세 안 됨	없음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전통차 제조 (소득금액 연 3,000만원 이하)	과세	과세 안 됨	의무 (과세사업자 등록)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전통차 제조 (소득금액 연 3,000만원 초과)	과세	과세 (3,000만원 초과분)	의무 (과세사업자 등록)
축산업(농가부업규모 초과) +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전통차 제조 → 소득금액 합계가 연 3,000만원 초과시	축산업(면세) 민박 등(과세)	과세 (3,000만원 초과분)	의무 (과세사업자 등록)

※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별표1]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소	50마리	- 성축을 기준으로 함 (육성우의 경우 2마리를 1마리로 계산) -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산정
양봉	100군	
산양, 면양	300마리	
돼지	700마리	
토끼	5,000마리	
닭, 오리	15,000마리	

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세제

(1) 작물재배업의 사업소득 제외

-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 : 비과세
- 그 외 작물재배업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10억원 초과시 “소득금액 × 10억원/수입금액” 상당액 비과세)

*1. 곡물 및 식량 작물업 : 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2. 그 외 작물재배업 : 채소, 화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인삼, 담배 등), 공예작물(목화, 삼, 깨 등),
기타(버섯, 콩나물, 종자, 묘목 등)

(2)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품(식용의 농·축·수·임산물 포함, 국내산·외국산 불문)
-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세제

(3) 농업용 기자재 등 매입시 부가가치세 영(0)세율 적용

- 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 등

*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자는 적용 농민의 범위에서 제외

(4) 농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 일반산업용과 구분이 명확치 않은 특정 품목의 기자재

(환급대행자(농협 등)을 통해 환급신청)

(5) 농민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자는 적용 농민의 범위에서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Farm Expense		Receipts	
1	\$70.00		\$60.00
2	\$30.00	\$150.00	\$50.00
3	Tarm Luger \$54.00	\$510.00	\$50.00
4	Farm Rypesse \$75.00	\$890.00	\$30.00
4	Augale Catress \$70.00	\$520.00	\$30.00
5	Fard Expees \$76.00	\$130.00	\$30.00
6	Marm Escues \$50.00	\$100.00	\$50.00
7	Peciple Catress \$70.00	\$130.00	\$30.00
7	Pactuly Cartnes \$66.00	\$510.00	\$50.00
8	Reciple Catress		
10	Family Luges \$70.70	\$530.00	\$60.00
19	Parnily Dares \$25.00	\$150.00	\$46.00
10	Pagalle Catress \$64.00	\$130.00	\$60.00
17	Parnily Dance \$53.40	\$510.00	\$50.00
13	Farm Recess \$66.00	\$510.00	\$56.00
19	Augale Datoos \$60.00	\$510.00	\$50.00
10	Fart Express \$64.00	\$250.00	\$52.00
19	Fard Expense \$73.00	\$510.00	\$53.00
19	Parnily Poncer \$80.00	\$520.00	\$50.00
230		\$543.00	\$50.00



신고 기한

- 소득 발생 다음연도 5월 1일~31일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필요
- 농가부업소득 합산 여부 확인

장부 비치·기장(농업, 어업)

- 복식부기의무자: 3억원 이상(전기수익금액기준)
- 간편장부대상자: 3억원 미만(전기수익금액기준)
- 성실신고확인: 15억이상(당기수익금액기준)
- 기장의무 판정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차감

추계 신고 유형(농업, 어업)

- 기준경비율: 6천만원 이상(전기) 또는 3억 이상(당기)
- 단순경비율: 6천만원 미만(전기) 또는 3억 미만(당기)
- 주요경비 증빙 필수(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신고기한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 10억원 초과 그외 작물재배업자, 농가부업소득 범위 초과 축산업자 등 신고 대상

계산서(전자계산서) 작성 및 발급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받는자에게 발급
-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자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 미발급시 가산세 부과

농·어업인 과세소득 계산 사례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전·답의 임대소득 (작물생산에 이용)	5,000	1,000	4,000
농가(축산)부업 (한우)	총수입금액 500,000 • 평균사육두수 60마리 • 농가부업 비과세 한도 50마리	410,000	90,000
전통차 제조	40,000	20,000	20,000

〔풀이〕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농지 임대소득 : 4,000천원 (비과세 소득에 해당)

2) 농가(축산)부업 소득

① 〔별표1〕 범위 이내의 소득 : $90,000\text{천원} \times 50/60 = 75,000\text{천원}$ (비과세)

② 〔별표1〕 범위 초과 소득 : $90,000\text{천원} - 75,000\text{천원} = 15,000\text{천원}$

농·어업인 과세소득 계산 사례

3) 축산 이외의 농가부업소득(전통차 제조) = 20,000천원

(판단) 농가(축산)부업규모 초과 소득(15,000천원)과 전통차 제조 소득(20,000천원)의 합계액(35,000천원)이 30,000천원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분(5,000천원)은 과세소득임.

① 축산부업소득 과세소득 해당분 :

$$5,000\text{천원} \times 15,000\text{천원} / 35,000\text{천원} = 2,143\text{천원}$$

② 축산 이외의 부업소득 과세소득 해당분 :

$$5,000\text{천원} - 2,143\text{천원} = 2,857\text{천원}$$

4) 과세대상 수입금액 계산

① 축산부업소득의 과세대상 수입금액 :

$$500,000\text{천원} \times 2,143\text{천원}(\text{축산 과세소득}) / 90,000\text{천원}(\text{축산 부업소득}) = 11,905\text{천원}$$

② 축산 이외의 농가부업소득의 과세대상 수입금액 :

$$40,000\text{천원} \times 2,857\text{천원} / 20,000\text{천원} = 5,714\text{천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영농조합법인

- 설립요건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
- 설립목적 : 협업적 농업경영
- 설립형태 : 조합 형태
- 의결권 : 1인 1표
- 비농업인 출자 :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
- 농지 소유 : 가능
- 사업내용 :
농업경영,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농산물 구매 및 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농업회사법인

- 설립요건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
- 설립목적 : 기업적 농업경영
- 설립형태 :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 의결권 : 출자지분에 비례
- 비농업인 출자 : 가능(총 출자액의 90% 초과 불가)
- 농지 소유 : 가능(업무집행권자의 1/3이상이 농업인일 것)
- 사업내용 : 영농조합법인과 동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과세특례

영농조합법인

- 법인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면제, 그 외 작물재배업소득 : 조합원 1인당 수입금액 6억원까지 면제,
그 외 사업소득 :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 면제

- 배당소득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그 외 작물재배업소득 중 법인세 면제되는 소득 : 면제,
그 외 소득 : 연간 조합원 1인당 12백만원 면제, 12백만원 초과금액은 5% 저율 분리과세

농업회사법인

- 법인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면제, 그 외 작물재배업소득 : 연간 50억원 한도 내에서 면제,
그 외 사업소득 :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50% 면제

- 배당소득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면제, 그 외 작물재배업소득 : 14% 분리과세

※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 : 농어업경영체 등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1. 적용요건

- 증여자 : 농지 소재지 거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 종사
- 수증자(영농자녀) : 18세 이상 직계비속,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

2. 감면대상 농지

-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외 소재하는 농지로 40,000m² 이내

3. 감면세액 한도 : 5년간 1억원

4. 사후관리 : 5년

-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증여)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 징수

영농상속 공제

1. 적용요건

-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상속인이 상속받는 것

1)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

2) 피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것으로 봄.

*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업 및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 합계액 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②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및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영농상속 공제

3) 영농상속인 요건 : 가) 또는 나)인 경우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②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및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나) 상속인이 영농후계자인 경우

2. 영농상속공제 금액 :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30억원 한도

3. 사후관리 : 5년

-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 하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 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강의 만족도 조사



<https://forms.gle/nY5RFXKR7dj8b9Ny8>

※ 만족도 조사 후 제출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농업교육포털에 강의 등록이 완료됩니다 ※